#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3호

# 공시 송달
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

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	주 소
㈜엠엔에프씨	164811-0007452	317-81-170/16	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18 (옥수동) 영도캐피탈 빌딩 601호

2. 서류의 명칭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 통보

## 3. 서류의 내용:

- 1. 귀사의 제16기(2009.1.1.~2009.12.31.) 사업보고서 등에 대하여「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및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6조에 의한 조사·감리를 실시한 결과, 우리 위원회(2015.12.23.의결)는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제55조 등에 의거'붙임'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·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한편,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<sup>\*</sup> 이내에 행정심판(우리 위원회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\*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 임:㈜엠엔에프씨에 대한 조치 1부. 끝.

(붙임)

# ㈜엠엔에프씨에 대한 조치

증권선물위원회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㈜엠엔에프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□ ㈜엠엔에프씨

ㅇ 대표이사 : 조성우

법인등록번호: 164811-0007452사업자등록번호: 312-81-17946

○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18 (옥수동) 영도캐피탈 빌딩 601호

### 2. 조치내용

- 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49조 제1항,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제 26조 및 제48조,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
  - 과태료 50,000,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㈜앰엔에프씨가 폐업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최저수준인 100,000원을 부과한다.
- □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6조 제2항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64조 제2항,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제55조 제1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
  - ㈜엠엔에프씨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12월, 감사인지정 3년, 대표이사 해임권고(조성우), 검찰고발(회사, 대표이사 조성우) 하여야 하나, ㈜엠엔에프씨가 상장폐지 및 폐업 등으로 인적·물적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이미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등의 위반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조치하지 아니한다.

## 3. 조치이유

#### 가. 지적사항

□ ㈜엠엔에프씨(이하 '회사')는 제16기(2009.1.1.~2009.12.31.)의 재무제표를 작성·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및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함

## o 장기대여금 허위계상(제16기 : 12,358백만원)

- '09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청약실적이 부진하자 대표이사(조성우)가 사채업자 차입금으로 '09.9.22. 10,470백만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이후 회사 자금으로 사채 원리금(12,170백만원)을 변제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

회사는 동 횡령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12,358백만원을 종속회사(㈜뮤직엔필름컴퍼니)에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동액의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하고 연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실 12,358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## 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

- 회사는 '11.2.9. 소액공모공시서류(공모금액 997백만원)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제16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

#### 나. 근거법규

- □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3조, 舊「기업회계기준서」제21호(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)에 따르면
  -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,
  -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, 경영성과, 이익잉여금 처분(또는 결손금처리),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
- 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, 159조, 제449조, 동법 시행령 제137조 및 제168조에 따르면
  - 상장법인 등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시하는 소액 공모공시서류,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함